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132
------	------

2021. 4. 8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3월 10일, 오한아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】

-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3.2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오한아 의원)

1. 제안이유

가. 시민참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시키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개정의 필요성

- 정부는 2014년 「문화기본법」과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정으로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였고, 이에 생활문화센터 조성,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등 생활문화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‘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(문화정책과-9477)’을 수립하고 기존처럼 동아리 및 장르 지원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생활문

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 주체형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는 등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기존 전문예술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문·비전문의 구분 없이 소규모 문화공동체나 지역문화 사랑방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다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‘생활문화’에 대한 용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상위법규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.
- 안 제4조는 시민이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 - 이는 기존 동아리·장르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‘일반 시민’으로의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방식이 다양해지는 서울시 정책을 고려할 때, 생활문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7조는 “지원단 설치·운영”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지원단을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도록 마련된 근거를 삭제하고 ‘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’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- 이는 동 조례안 제정 당시(2016.12월) ‘서울문화재단 내 별도의 추진단 구성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’이라는 의견을 개진¹⁾하였으나 서울시가 ‘생활문화’를 시장역점 사업으로 추진체를 집약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되었던 것임.
-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조례안이 공포(2017.1.5.)되기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 ‘생활문화지원단’을 미리 신설하여(2016.12.8.)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, 불과 2년만에 ‘지역문화본부’ 내 ‘생활문화팀’으로 조직이 통합(2018.12.26.)되는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.
- 따라서 생활문화의 특성상 다양하고 자율적인 추진 주체가 필요하므로 ‘문화재단’으로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추진 주체의 다양성에 반하고 제한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1) 제271회 정례회,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, 2016.12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한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3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: 오한아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덕, 김종무, 김평남,
김혜련, 김희걸, 박기열,
박순규, 이광성, 이영실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참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시민 생활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 노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, 지역문화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1. “생활문화”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”을 “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~ 3. (생략)
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3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

---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---.

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
---- 제2항 -----

-----.

<후단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